

화장품소재개발 연구

김동욱†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pedkim@inje.ac.kr†)

최근의 국제정세는 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화장품소재의 국산화절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화장품소재는 일반화장품소재와 기능성화장품소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화장품소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납, 비소, 수은 등의 중금속과 디옥산, 메탄올,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허용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총호기성생균수 등의 미생물한도규정도 명시되어 있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유효성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규정에 의해 문제시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최근 확대되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모발의 색상변화, 탈모증상완화,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 등이 추가되었다. 기능성화장품 소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성시험과 유효성시험을 실시해야만 한다. 안전성시험시 특히 동물시험을 실시하지 말아야하며, 유효성시험의 경우 효력시험과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임상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